

N · E · W · S · P · L · A · Z · A

해외 경쟁정책 동향

본협회 조사부

미국편

Time Warner 사의 Turner 방송사 인수, 원칙적으로 인가 받아

논쟁거리가 되어 왔던 Time Warner 사의 Turner Broadcasting System의 75억 달러의 인수가 원칙적으로 미국 경쟁당국의 인가를 받았다. 당해 거래는 작년 8월에 처음 발표되었는데, 미국 유선방송 산업에서의 경쟁에 관한 우려 때문에 인가가 지연되어 왔었다.

Time Warner 사는 당해 거래는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왜냐하면 FTC 업무담당자들과의 사이에 확정적인 협정이 맺어져야 하고 이는 그 다음으로

위원회에서 인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인가는 빠르면 이번 주말에 날 것으로 생각된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 최대의 유선 TV사업자인 Tele-Communications Inc. (TCI)가 보유하고 있는 21%의 Turner사 주식이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주식들은 Time Warner사의 9%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었다.

Time Warner 사가 두 번째로 큰 유선방송 사업자이기 때문에 FTC는 이로 인해 양 회사간의 경쟁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새로운 협정 하에서는 9%의 Time Warner 사 주식은 별개의 회사에 할당되어 TCI의 자회사인 Liberty Media 사의 주주들이 소유하게 되는데, TCI는 현재 이 자회사를 통해

Turner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TCI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안전장치가 도입될 것이다.

이는 Time Warner 사에게는 지배권에 대한 약간의 상실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원래 협정에 따르면 9% 주식의 의결권은 Time Warner 사의 의장인 Gerlad Levin이 보유하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원래 거래에 대한 또하나의 상당한 변경으로서, TCI가 Turner 사의 프로그램을 앞으로 20년 동안 할인가에 공급하기로 한 계약은 폐기될 것이다. 새로운 계약이 기업인수가 이루어진 후 6개월 내에 작성될 것이다.

TCI는 이 주식 배분 계획은 "독창적이고 이로운" 것이라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이로 인해 Liberty Media사의 주주들은 직접적으로 새로운 Time Warner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당해 거래에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격은 17일 급등했다. 종반 거래에서 Time Warner사의 주가가격은 9% 올라 3달러 오른 36¼달러에 거래되었다. Turner사의 주가는 10% 이상 올라 2½달러 오른 26½달러에 거래되었다. TCI의 "B" 주가는 9% 올라 1¼달러 오른 15¼달러에 거래되었고, Liberty Media사의 주가는 1푼달러 오른 23푼달러에 거래되었다.

미국 방송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중의 하나인 John Malone이 회장인 TCI는 "Time Warner사의 경영에 참가하기를 열망했었다"는 것을 부인했다.

TCI는 새로운 소유구조 하에서 Turner사 관련 계약을 재협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7/18, 1996, Financial Times)

미-영간 항공협정, 기업결합 조사 받을지도

American Airlines사와 British Airways사(BA)간의 제휴는 어제(21일) 영국 공정거래청(OFT) 장관인 John Bridgeman이 이 연계는 기업결합에 해당하므로 독점 및 기업결합 심사위원회(MMC)의 조사를 받아야 할 지도 모른다고 함으로써 위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 항공사는 그들의 제휴 제안이 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하여 환영하며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달 초에 동협정이 공표되었을 때 고위 임원들은 OFT가 개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음을 암시하였었다.

BA사-American Airlines사간의 연계로 인해 가장 강력한 국제항공 제휴가 이루어지는데, 두 항공사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장거리 노선인 영국-미국간 교통을 강력히 지배하게 된다. 이들 회사는 영-미 항공노선의 60%를, 그리고 런던과 뉴욕간 교통의 7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제휴는 미국 법무부의 조사도 받을 것이며, 법무부는 운수부에 동 제휴 승인 여부에 대하여 조언하게 된다. 비록 유럽위원회가 동 연계를 조사하고는 있지만, OFT는 이 제휴가 유럽 연합 기업결합 규정의 범위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번의 "기업결합" 관련 발표는 통상산업부 장관인 Ian Lang이 Bridgeman 장관에게 보낸 동 제휴를 조사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의서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Bridgeman 장관은 Lang 장관에게 이 사건을 MMC에 회부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BA사와 이 제휴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였다.

OFT는 동 제휴가 기업결합에 해당한다는 이 결정을 "특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두 회사는 주식 교환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OFT는 공정거래법상 두 회사의 조직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되면 기업결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

American Airlines사와 BA사는 또한 어느 항공사의

항공편인가에 관계없이 대서양 횡단 항공편에 대하여 양사의 편명을 붙일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회사들은 운항계획표를 변경하여 연결편 승객들이 한 항공사 항공편에서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으로 옮겨타는 것을 더욱 쉽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두 항공사는 12개의 작업반을 구성하여 상용고객우대제도 및 컴퓨터 시스템을 포함한 일련의 사업을 통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항공사들은 자신들은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별개의 회사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

이 회사들은 또한 이 연계는 더욱 큰 편의를 제공할 것이므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다.

동 제휴는 영국과 미국간의 "영공개방" 협정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사들은 이로 인해 경쟁이 증가될 것이라고 할 것이다.

(6/22-23, 1996, Financial Times)

법무부, Union Pacific-Southern Pacific 기업결합 금지 촉구

법무부는 Union Pacific Corp.가 39 달러로 Southern Pacific Rail Corp.를 매입하려는 제안에 대하여 Union Pacific 사는 그 결과 수백 개의 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운수부와 농무부도 Union Pacific 사가 주요한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당해 취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 결합이 이루어지면 미국 최대의 철도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육상운송위원회에 제출된 당해 이의는 필연적으로 당해 거래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며 동 위원회가 최종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는 위원회가 당해 취득을 금지하거나 Union Pacific 사의 자산 매각을 요구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4월에 우려되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동위원회에 당해 거래는 "공익에 합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표명

하였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의견서는 Union Pacific 사가 닥쳐올 논란을 떨쳐 버리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법무부가 처음에 당해 기업결합을 비난하였을때, 법무부는 Union Pacific 사가 반경쟁적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남겨 두었다"고 Salomon Brothers Inc.의 분석가인 James Valentine은 말하였다. "그러나 명백히 Union Pacific 사는 제안된 당해 취득을 강하게 비난하여 왔던 해상운송업자와의 문제 해결의 노력이 부족했다."

동 회사는 서부 지역에서의 주요 경쟁자인 Burlington Northern Santa Fe Corp.에게 독점 노선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당해 제안이 "대규모적인 경쟁 문제를 치유하기에는 전적으로 불충분하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또한 Southern Pacific 사의 위험한 재정 상태로 인해 기업결합이 필요하다는 동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무부는 Union Pacific 사가 휴스턴 및 오클랜드에서 출

발하는 주요 노선을 매각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시카고까지 운행하는 또다른 노선도 매각대상에 추가하였다. 이 노선 및 로스앤젤레스로부터 동부 관문으로 연결되는 다른 노선들은 컨테이너 화물 운송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 트럭들과의 치열한 경쟁 상태하에 있다.

법무부의 의견서에 대하여는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당해 거래에 반대하는 Kansas City Southern Industries Inc.의 한 구성단위인 Kansas City Southern Railway Co. 담당 변호사인 James Rill은 “당해 기업결합은 문제가 생겼다”고 하였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 주 베들레헴에 소재한 Union Pacific 사는 제안된 당해 취득은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송업자, 항구, 주지사 및 지역정부 관리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어떠한 철도 기업결합도 마음에 든다고 한 적이 없다”고 Union Pacific사 대변인인 Gary Schuster는 말하였

다. “그러나 법무부는 반경쟁적이라는 이유로 철도에 대한 기업결합의 봉쇄가 성공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Southern Pacific 사는 법무부의 입장은 미국에서 가장 큰 철도 회사이며 그 자체가 철도 기업결합의 산물인 BNSF의 경쟁력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Burlington Northern Santa Fe 사와 경쟁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핀 적이 없었다”고 Southern Pacific 사의 대변인인 Larry Kaufman은 말하였다. “우리의 기업결합 제안은 우리가 BNSF의 유일한 조정자이며 시장에서의 가격 인상을 억제할 유일한 방안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하였다.

운수부는 육상운송위원회에 대하여 멕시코만 연안으로부터 중서부까지의 화학물질 운송 및 멕시코와의 점증하는 무역에 긴요한 병행 노선의 매각을 명령하도록 촉구하였다. 운수부는 만일 당해 거래가 현재 형태대로 승인된다면 이는 또 다른 기업결합에 대한 압력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한 내지 두 개의 ‘거대한 대륙횡단 철도’의 형성도 포함될 것이라고 하였다.

농무부는 동일한 노선에서의 농작물 수송의 독점화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표명하였다. (6 / 4, 1996, The Wall Street Journal)

부러쉬(청소용 솔)용 섬유의 판매회사 등 형사 및 민사로 제소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구 연방지법에 제출된 기소장(1996년 5월 30일자)에 의하면 네덜란드의 탄피코섬유(청소용 부러쉬 등의 재료)의 판매업자인 A&L Mayer Associate사와 그 계열회사인 A&L Mayer 사(뉴욕주 소재) 및 Fibras Sattilo사(멕시코의 회사로 A&L Mayer Associate사에 의하여 판매되는 탄피코섬유의 유일한 공급업자이며, 가공 탄피코섬유의 세계 2대 공급업자의 하나로 되어 있다.)의 합계 3사가 미국에 있어서 수입가격 및 재판매가격의 유지와 판매수량의 할당에 관한 공모를 행

하여 셔먼법 제1조에 위반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피고 3사는 1990년 4월부터 1995년 4월까지 사이의 재판매가격 유지, 가격구속, 시장분할에 관한 민사제소를 받았으나 동의판결로 할 것에 동의했다.

제시된 동의판결안에 의하면, 피고 3사는 미국에 있어서 다른 모든 탄피코섬유의 가공업자 또는 판매업자와의 사이에서 수입가격 혹은 재판매가격의 설정 또는 판매수량, 시장 또는 고객의 할당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행하는 것이 금지되고, 아울러 자기의 판매선에 대하여 재판매 가격을 제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기소장(형사)에 의하면 피고 3사는 1990년 1월부터 1995년 4월까지의 사이에 공동으로 탄피코섬유의 판매에 있어서의 경쟁을 금지·배제하는 공모를 행하여 왔다.

당해 공모는 미국에 수입되어 부러쉬·메이커에 판매되는 탄피코섬유의 가격조정 및 판매수량의 할당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법성에 의하면

A&L Mayer Associate사는 5년간에 걸친 공모에 의하여 유통업자를 통하여 미국에 있어서 1,000만 달러에 달하는 탄피코섬유를 판매했다.

빙가만 반트러스트 국장은 피고3사에 대한 소송은 “당해 분야의 경쟁의 회복과 대화사로부터 가정에 이르는 모든 소비자에 대한 탄피코섬유 관련 제품의 판매가격의 인하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5/30, 1996, 미법무부 발표문)

스낵 제조업체들, 반트러스트 위반혐의로 조사받아

염분포함 스낵 산업에서의 반경쟁적 관행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에 밝혀지지 않은 조사에서 몇몇 스낵 제조회사들이 미국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의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동 조사에 대하여 논평하기를 거부했으나, 대변인은 동 당국이 스낵 산업에서의 “반경쟁적 관행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몇몇 지역적 스낵 제조회사들의 임원들은 이 조사가 PepsiCo

Inc.의 프리토레이 스낵사업부에 집중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이들 임원들은 법무부 관리들이 프리토레이의 식료품점 선반 공간 구매 및 배타적 판매 촉진 확보 관행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했다. 그러한 관행은 당해 산업에서는 일반적인 것이다.

델러스에 소재한 프리토레이의 대변인은 동 회사는 최근 Anheuser-Busch Cos.로부터 Eagle Snacks를 매입하면서 법무부의 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동 회사는 다른 조사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법무부 대변인은 당해 산업의 조사는 프리토레이의 공장 매입과는 “별개이며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두 스낵회사의 임원들은 이들이 법무부의 조사를 받았으며 질문들은 프리토레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중서부 어느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한 사람은 법무부 관리들이 3주 전에 자신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들은 선반 공간에

대한 프리미엄 지불 및 독점적 판매촉진 관행에 관하여 질문을 던졌다고 하였다.

한 프레첼 제조회사 사장인 또다른 사람은 “질문들은 매우 상세하였다. 그들은 갖은 질문을 다 던졌다”고 하였다. 그는 동 당국은 프리토레이의 소매 판매전략이 다른 회사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질문하였다고 덧붙였다.

조사를 받은 임원들 모두 동 당국은 또한 프리토레이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지역에서의 프리토레이의 가격설정 정책에 관하여서도 질문하였다고 하였다.

프리토레이는 150억달러 규모의 미 전역의 염분포함 스낵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또띠야 시장의 80%를 점하고 있다.

동 회사의 지배력은 최근 Anheuser-Busch 사가 프리토레이 외에 자신의 Eagles 스낵 사업부를 매입할 기업을 찾지 못한 결과 더욱 강화되었다. 동 매입은 5월 3일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다.

산업계 임원들은 사석에서

프리토레이의 전국적 영업망과 재력에 대하여 불평하여 왔다. 산업 분석가들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30개 이상의 스낵회사들이 폐업하였다는 것이다.

프리토레이는 PepsiCo사의 주요 돈벌이 부문 중 하나이다. 회장 겸 사장인 Steven Reinemund의 지도하에 동사의 판매량은 1995년 28% 증가하여 85억 달러에 이르렀고 사업이익은 14억 달러 - PepsiCo사의 총 사업이익의 41% - 로 공시되었다. 작년 이 회사는 동 산업 전체보다 10배 이상 성장하였다.

(5/24, 1996, The Wall Street Journal)

미국 FTC 의약품 소매체인의 합병에 관하여 긴급정지 명령 신청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4월 17일 미국 국내에서 의약품 소매체인 상위 2사인 Rite Aid Corp.과 Levco Ds Inc.의 합병계획에 대하여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하였다. FTC간부는 만일

양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는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외에 동부의 7개 주에서 의약품의 소매가격을 불공정하게 올릴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반트러스트법(크레이튼법 제7조)을 위반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180억불 규모인 이번의 합병 계획은 작년 11월에 발표되었으며, FTC는 이 합병계획에 대한 오하이오주 연방지방법관 소에의 긴급정지명령 신청은 전원일치로 의결되었다.

FTC의 가리 경쟁국 차장은 “합병되는 신회사는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의 많은 점포를 가지는 단일 소매업체인을 형성함으로써 당해 시장에 있어 경쟁을 감소시켜 소매가격을 자유로이 인상,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명하였다.

Rite Aid사 간부는 “이번의 FTC에 의한 긴급정지명령 신청으로 Levco사 주주에 대하여 동사주의 Rite Aid사에의 전환을 위한 마감기한을 당초 예정일인 4월 20일에서 24일간 연장기로 했다”고 언급하고, “이번 합병이 인정될 때까지

FTC와의 교섭을 계속하겠다”고 언급하였다. Levco사의 홍보담당인 Tom Dingley씨는 “당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특별히 논평할 만한 것은 없다”고 언급하였다.

FTC 간부는 오하이오주, 웨스트·버지니아주 및 뉴욕주의 사법장관도 FTC와 같은 긴급정지명령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Rite Aid사는 최근에 건강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처방전에 대한 가격인하 요구에 직면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의 합병을 기도한 것이다. 즉 동사는 시장점유율을 증대함으로써 상기 가격인하 요구를 수용하고 상실된 마진을 외형증가로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FTC의 본건 담당관은 “FTC가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는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대부분이 자주적으로 합병을 유보하게 되며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상 FTC의 신청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언급하였다.

Levco사의 종업원 수는

32,000명으로 이중 오하이오주의 수도 「클리브랜드」에서 좀 떨어진 Twinsburg에 있는 본사에는 1,1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사는 이번의 합병이 실현되는 경우 상기 본사 종업원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사의 점포수는 합계 2,175사이다. 이중 메릴랜드주에 48점, 버지니아주에 232점을 가지고 있다.

Rite Aid사는 본사가 펜실베이니아주 Camp Hill에 있으며 종업원수는 32,000명이다. 동사의 점포수는 2,829개나 된다.

※ Rite Aid사는 FTC에 화해를 신청하였으나 FTC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번의 합병계획은 단념한 것으로 보고 있다.

(4/8, 1996, Washington Post, 5/1, 1996, Trade Regulation Report NO. 418)

FTC, Toys 'R' Us 사에 대해 반트러스트 소송 제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과감한 반트러스트 공격에서 Toys 'R' Us Inc.에 대하

여 제조업체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할인 소매업자들의 경쟁능력을 해함으로써 위법하게 장난감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동 위원회는 3-2의 표결로 미국 최대의 장난감 소매업체에 대하여 위원회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FTC는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Toys 'R' Us 사가 장난감 제조업체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인기상품을 할인업체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난감 가격을 인상하고 가격경쟁을 어렵게 하는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FTC의 이번 표결로 인해 2년전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던 이후 최대의 반트러스트 대결이 시작된다.

동 절차는 몇 달이 걸릴 것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산업에서의 소매업자들은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하여 제조업체들에게 압력을 넣는 데 조심스러워질 것이라고 반트러스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뉴저지 주 Paramus에 소재

한 Toys 'R' Us 사는 이 사건을 다투겠다고 공언하여 왔으며, 반트러스트 전문가들은 FTC가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Toys 'R' Us 사가 Mattel Inc. 및 Hasbro Inc.를 포함하여 미국의 초대형 제조업체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시장력을 갖고 있는가이다. 몇몇 제조업체들은 지난 22일 자신들은 창고클럽과 같은 할인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강압을 받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압력도 받지 않았다”고 Lewis Galoob Toys Inc.의 회장 겸 사장인 Mark Goldman은 말하였다. 그는 “창고클럽은 우리 사업 중 가장 빨리 성장하는 분야이다”고 덧붙였다.

Hasbro 사의 대변인은 동사의 장난감들은 창고클럽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동 회사는 FTC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FTC와 Toys 'R' Us 사간의 문제이다”고 그는 말하였다.

FTC 경쟁국장인 William Baer는 이 사건에 대하여 승소를 “확신한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은 “반트러스트법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은 한 소매업체가 높은 시장점유율 - Baer는 21% 내지 30%로 추정했다 - 을 보유하고 있어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당해 시장점유율은 반트러스트 전문가들이 가격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저한”이라고 하였다.

Toys 'R' Us 사는 격렬하게 경쟁적인 이 산업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회사의 사장인 Michael Goldstein은 “우리는 창고클럽과 똑같은 상품을 판매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의심의 여지 없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FTC는 동 관행을 금지하며 Toys 'R' Us 사가 장난감 제조업자들에게 보복하지 못하게 할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Roscoe Starek과 Mary Azcuenaga 위원은 논평없이 동 제소에 반대표를 던졌다.

2년간의 조사 결과 동 제소장은 어떻게 Toys 'R' Us 사가 구매고객들이 회원비를 내는 저가의 창고클럽에서의 장난감 판매 신장을 해하려고 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FTC에 따르면 7년 전부터 Toys 'R' Us 사는 제조업체들이 Toys 'R' Us 사에서 판매되는 특정한 장난감들을 창고클럽에 공급하기를 거절하거나 더 높은 가격이 붙는 패키지로 판매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Toys 'R' Us 사에서 10.95 달러에 판매되는 특별한 Barbie 인형은 할인클럽에서는 액세서리만 첨부된 채 가격이 인상되어 15.99 달러로 구입하여야 한다. 이 관행은 또한 비교 구매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Baer는 말하였다.

Toys 'R' Us 사는 개별적인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설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해하는 장난감 제조업체들간의 묵시적 합의를

조정하였다고 FTC는 소장에서 밝혔다. 동조하려고 하지 않는 장난감 제조업체들은 Toys 'R' Us 사의 보복을 받았는데, 동 사는 이들 제조업체들의 제품을 선반에서 치우거나 할인클럽에 판매되는 제품들의 주문을 거부하는 식이었다.

Toys 'R' Us 사의 600개 상점은 판매에서 매우 중요하여, "다수의 장난감 제조업체들은 동조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Baer는 말하였다.

(5/23, 1996, The Wall Street Journal)

일본편

소비세인상 전가 카르텔 인정 안해-공취위, 위법사례 명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의 소비세율인상에 대하여 이에 편승한 가격인상 및 가격카르텔의 감시강화에 나선다. 머지않아 신세제 실시원활화 추진본부(본부장: 하시모토 류타로 수상)는 회합을 열고, 선취적

인 조정가격인상의 움직임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감시하기로 합의할 것이다.

공정취인위원회도 소비세인상에 따라 업계단체가 카르텔을 결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의 미연방지를 노린 가이드라인 작성에 착수한다. 서울인상에 따라 불투명한 거래가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소비세율은 내년 4월에 현행 3%에서 5%로 인상되도록 결정되어 있다. 신세제추진본부는 1989년의 소비세 도입시에 설치한 것으로서, 이번 회합은 각 성청의 국장급 회합이다. 회합에서는 소비세도입시의 대응을 참고로 하여 편승가격인상 방지를 위해 업계에의 지도를 철저히 할 것에 합의할 것이다.

경제기획청도 4월의 서울인상시의 편승가격인상 및 상품 가격에 끝자리가 남지 않도록 사전에 가격을 인상하여 두는 「조정가격인상」의 움직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통산성 및 농수성, 후생성 등 업계를 관할하고 있는 관청에

협력을 의뢰하는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사 및 감시의 실시를 요청할 것이다. 물가 모니터도 활용하여 끝자리의 편승 가격인상 방지에 노력할 방침이다.

공취위는 소비세 도입시에 적응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카르텔의 결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번에는 '소비세는 정착되었다'(공취위)고 판단, 전가 카르텔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당시 적응이 곤란한 중소기업에 배려한 특례로서 소매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신고된 약 5천건을 대상으로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면제했었다.

공취위는 이번에는 전가 카르텔을 인정하지 않음을 업계 및 기업에 주지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초에도 공포할 방침이며, 서울인상에 따라 위법으로 되는 업계단체 및 기업의 행위를 예시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업계단체가 서울인상에 따라 가격인상을 합의하면 카르텔로서 위법하게 되는 것 등을 예시하여, 업계단체 등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7/4, 1996,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청량음료 등 3품목에
대해 유통가이드라인 준수 요청**

일본 공정취인위원회는 27일 청량음료수 등 세 품목을 대상으로 한 유통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업체가 소매점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요청하는 등 일부에서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공취위는 같은 날에 전국 청량음료공업회 등 네 단체에 대하여 위법행위방지를 위한 유통관행 가이드라인 준수를 가맹각사에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요청하였다.

조사는 내외 가격차가 큰 소비재에서 청량 음료수, 햄·소세지, 부인의료품을 선택, 95년 10월부터 금년 6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공취위는 내외가격차 시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이번의 조사도 그 일환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판매가격에 관하여 요청이 있었다'고 회답한 소매업체는 청량음료(가두판매)에서 16%, 햄·소세지가 21%, 부인속옷(일상시기)이

16% 등이었다.
(6/28, 1996, 일본경제신문)

**미국, 반트러스트법 운용
엄격히 - 통신·의약 등 표적,
합병 저지 및 경쟁제한 적발**

미국에서 반트러스트법의 운용강화의 움직임이 확대되어 오고 있다. 법무부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통신·미디어, 의약, 소매업계 등을 대상으로 합병 저지 및 경쟁제한적 행위의 적발에 번갈아 나서고 있다. M&A(기업의 합병·매수)의 급증 등으로 각 시장의 독점화경향이 강하여지고 있는 가운데, 반트러스트당국은 종래의 운용완화의 자세를 크게 전환하고 있다. 미국 산업계에서는 앞으로 M&A 전략의 재검토 등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 당국의 방침전환을 확실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음료·식품 대기업인 펩시콜라사와 완구소매 대기업인 Toys 'R' Us사에 관한 사건이다. 펩시콜라사의 스낵 식품부분은 소매점에 '요금'을 지불하고 점포내의 진열 장소를 확보하여 왔다. 법무

부는 이러한 상행위가 경쟁제한적이라는 의혹을 갖고 최근 조사에 들어갔다.

Toys 'R' Us사는 완구 제조업체와의 계약에서 경쟁상대인 소매회사에 동일한 완구를 도매로 판매하지 않도록 요구하여 왔으나, FTC는 이를 문제시하여 지난 5월에 조사를 하였다. 양사 모두 그러한 거래방법을 오랜 기간 사용하고 있는데, 당국은 지금까지의 '묵인' 자세를 돌연 바꾸었다.

표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통신·미디어, 의료, 의약, 컴퓨터 등 성장산업이다. FTC는 종합 미디어 기업인 타임 워너사의 터너 브로드캐스팅사 매수에도 난색을 보이고 있는 모양이다.

의료품 소매 대기업인 라이트·인드사와 레부코사의 기업결합 계획은 FTC의 반대로 4월말에 중지되었다. 미국 경제를 앞으로 담당할 급성장 산업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를 단속하여, 성장을 계속 유지시킬 목적으로 보여진다.

당국이 자세를 전환한 이유로서는 ① 과거 최고의 속도로 확대되는 M&A 붐에의 경계

감 ② 일부에서 대두되어 온 당국 불필요론의 해소 ③ 소비자애의 호소를 노리는 클린턴 정권의 재선전략 등이 있다고 간주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반트러스트법의 운용강화가 이어진다”(반트러스트법 전문변호사 존 심스)라는 견해가 강하고, 산업계에 서는 M&A에 신중해지는 등의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6/22, 1996,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소프트웨어 등 비제조업의 하도급 보호에 감시 강화

공정취인위원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회사 및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등 비제조업의 하도급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선 기업에 의한 지불의 지연 및 대금감액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동 위원회는 수십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6월에는 학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 조사 결과를 기초로 감시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의 검토에 착수할 것이다.

제조업에 관하여서는 1956년에 하도급대금법을 제정, 공취위가 매년 모기업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하도급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발각되는 경우 경고 및 권고 등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비제조업에 관하여서는 이러한 조치는 없었다.

공취위는 우선 학자 및 중소기업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하도급거래연구회」(회장 佐藤芳雄 게이오 대학 명예교수)로 하여금 비제조업의 특수한 거래실태를 분석케 할 예정이다. 이 연구회는 1년 정도 동안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 및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작성 등을 검토한다.

비제조업의 하도급거래는 제조업에 비하여 부당여부의 판단이 어렵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설계대로 만들어진 부품의 수취 거부는 위법한 것이지만, 프로그램 제작 등 비제조업에서는 계획서에 따르면 더라도 거래선이 만족한다고는 할 수 없어, 수취 거부를 일률

적으로 위법으로 할 수는 없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공취위는 금년 2월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5/27, 1996,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작년도 경품표시법 위반 요약 - 과대경품 눈에 띄어

공정취인위원회는 17일 부당한 경품제공 및 부당표시 등 95년도의 경품표시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을 요약 발표했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처분의 법적조치인 배제 명령은 3건(94년도에는 13건), 이에 이어 행정처분인 경고는 609건(94년도에는 725건)이었다. 권한의 일부를 위임한 都道府縣에 의한 주의는 2134건(94년도에는 2741건)이었다.

공취위는 건강식품의 부당한 효능표시 및 가공의 제조업체 희망소매가격을 사용한 이중가격표시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4월부터는 규제완화책에 의해 경품의 상한액은 인상되었으나, 완화 후의 규칙에도 위반되는 과대한 경품제공이 많으며, 경품규제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

도 근절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깃털이불의 제조판매업자 9개사가 다운 혼합율이 80%에 달하지 않는 상품을 90%로 품질표시 라벨 및 신문 전단 광고 등에 표시하였다고 하여 경고를 하였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제를 마시기만 하면 대폭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 표시한 건강식품판매업자 및 훈련을 받으면 누구라도 무조건 시력이 회복되는 것 같은 광고를 낸 시력회복 트레이닝업자가 경고를 받았다.

(5/18, 1996, 일본경제신문)

공취위, 재판매관련 혐의로 소니 사 계열 SCE 사 조사

가정용 게임기 「플레이 스테이션」을 판매하는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SCE, 동경도항구)가 동사제품인 게임기용 소프트웨어 및 게임기 본체의 재판매가격을 인상하지 말도록 거래업자에게 요구하는 “암묵적 재판매”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9일 동사의 본사 및 판

매회사 등 수십개소를 독점금지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금지) 위반혐의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취위의 조사 및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SCE 사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동사의 제품인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인상하여 판매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희망소매가격 5,800엔인 소프트웨어의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싸게 판다고 주장하는 전단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조사·감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업자에게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암시하였다고 한다. 중고 소프트웨어가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회사 등에 중고품의 취급을 금지하고 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플레이 스테이션」은 32비트 기기로서 불리는 가정용 게임기이다. 세가·엔터프라이즈가 판매하는 「세가·사탄」과의 판매경쟁이 격화하던 중, SCE 사는 작년 여름 본체 가격이 예전의 기기보다 1만엔 싼 29,800엔인 기종을 발매하였

다. 작년말에는 오픈 가격으로의 판매로 이행하고, 희망소매가격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가격에 대하여서도 극단적인 염가판매가 되지 않도록 SCE 사가 지시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한다.

SCE 사는 소니 사가 가정용 게임기분야에 진입하기 위해 93년 11월에 설립하였다.

플레이 스테이션의 세계에서 판매대수는 작년말로 340만대이다. 전용 소프트웨어는 금년 말로 약 300종이 된다고 한다.

(5/10, 1996, 일본경제신문)

EU편

EU, 전유럽내의 기업결합에 대한 권한 확대 추구

EU의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6월 10일 전유럽내의 기업결합을 감독할 자신의 권한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위원회는 현재 각국의 규제당국이 감독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결합 및 합작투자사업을 자신의 업무영역 내에 포함시킴으로써 처리대상인 반트러스트 사건을 배가하고자 하고 있다. 이 제안은 힘든 싸움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각국의 규제당국은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지키는 데 몰두하고 있으며, 반면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 각국의 각기 다른 태도로 인해 공동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오랫동안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사실 동 위원회는 강력한 각국의 반대에 부딪쳐 3년전 반트러스트 권한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바 있다.

가장 강력한 반대자인 독일은 동 위원회는 정치적 압력을 받기 쉽다고 믿고 있으며 독일의 카르텔청을 모델로 한 새로운 독립적 기관에 EU 기업결합 심사권한을 부여하고 싶어한다.

영국도 또한 이 움직임에 반대하는데, 영국은 그렇게 되면 EU 차원에서 심사될 필요가 있는 소수의 대형 기업결합 거래로부터 유럽위원회의 주의가 멀어질 뿐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 관리들은

수요일(10일) 이 제안을 옹호하였으며, 이는 브뤼셀의 관료들간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업계가 유럽의 단일시장을 잘 이용하게끔 돕고자 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하였다.

규제를 단순화함으로써 동 제안은 "유럽연합에 이로운 기업결합 활동 및 업계의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라고 EU 고용주연합인 Unice는 최근 밝혔다. 동 제안으로 인해 유럽위원회의 반트러스트 심사권한은 참여기업의 전세계적 판매고 합계가 30억 ECU(37억 7,000만 달러) 이상이며 한 개별 기업의 유럽연합 내에서의 판매고가 적어도 1억 5,000만 ECU인 기업결합 및 합작투자 사업을 다루도록 확장될 것이다.

1990년 이래 유럽위원회는 전세계적 판매고가 50억 ECU 이상이며 유럽연합 내에서의 판매고가 2억 5,000만 ECU인 기업들에 관련된 기업결합 및 합작투자사업에 대하여서만 유일한 심사권한을 갖고 있다.

(7/11, 1996,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유럽위원회, 스페인의 합작투자 사업에 경고

유럽위원회는 스페인의 유선 텔레비전방송 합작투자사업(Cablevision)의 참가자에 대하여 정식으로 유럽위원회에 대하여 당해거래의 신고를 행하지 않는 한 고액의 제재금이 과해지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Van Miert 위원(경쟁정책담당)은 Canal Plus 사(프랑스 유선 텔레비전방송), Telefonica 사(스페인의 전기통신 그룹)에 대하여, 스페인 정부가 승인하였다고 하여도 유럽위원회에의 신고를 게을리함으로써 EU경쟁법규에 위반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Telefonica 사에 의하면 Cablevision에의 출자비율은 Telefonica사 51퍼센트, Canal Plus 사의 자회사 10퍼센트, 기타 몇몇 회사가 나머지 39퍼센트 출자할 계획이며, 이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실험방송을 행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쟁당국이 Telefonica 사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본건 계획을 승인하지 않도

록 권고하였으나, 스페인 정부는 조건부로 이를 승인하였다. 이 조건에는 Telefonica 사가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자기의 유선망에의 접근을 인정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스페인 정부는 프랑스의 Canal Plus 사가 그 스페인 자회사에 대하여 소유하는 지분이 불과 25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건 합작투자사업의 설립이 국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국내적인 것으로서,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프랑스의 모회사가 경영관리담당임을 포함, 스페인 자회사 임원의 과반수를 지명할 권한을 갖고 있어, 유효하게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당해 합작투자사업은 국경을 넘은 것으로서, 유럽위원회의 관할에 속한다고 하였다.

Telefonica 사는 유럽위원회에 대하여 대량의 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유럽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다른 문서도 제출할 생각이 있다고 말하였다.

유럽위원회의 담당관은 Tele-

fonica 사와 Canal Plus 사가 스페인 정부를 방패막이로 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유럽위원회에의 신고 해태에 대하여는 5만 ECU의 제재금이 부과된다고 말하고 있다.

(4/2, 1996, Financial Times, 국제상사법무, Vol. 24, No. 5)

EU, 「지퍼·가이기」사와 「샌즈」사의 합병 정식심사

EU의 「반·밀트」위원(경쟁정책담당)은 「지퍼·가이기」사와 「샌즈」사에 의한 900억불을 상회하는 합병계획(합병 후의 회사인 Novart사는 세계 제2위의 의약품 생산 그룹이 됨)은 1개월의 예비심사를 끝내고 4개월에 걸치는 정식심사를 받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동위원은 본건에 관하여 크고 복잡한 거래이고, 엄청나게 많은 상품에 대하여 상이한 수개의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며 EU측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논평하였다.

EU에 제출되는 기업결합의 약 90%는 1개월에 걸친 예비

심사 후에 승인되며 나머지 10%는 정식심사를 받게 된다. (4/27, 1996, Financial Times)

EU, 백금 생산회사의 합병을 금지

EU는 백금(Platinum)을 생산하는 남아프리카의 Gencor사와 영국의 Lonrho n PLC 자회사인 Lonrho(Lonrho Platinum Division)사의 합병계획을 금지 시키기로 하였다.

「반·밀트」위원(경쟁정책담당)이 제출한 상세보고서에 의거, EU는 양사의 합병으로 세계의 백금 및 소듐(알카리 금속)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과점이 형성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본 합병의 사전제출은 1995년 11월 17일에 이루어졌으며 EU는 1995년 12월 20일에 세부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Gencor사와 Lonrho사가 합병하는 경우 백금 시장에서 28%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어 남아프리카의 Amplats사(Anglo American Platinum Corporation, 시장점유율 35%)에 필적하는 회사가 된

다. 한편 주요공급국의 하나로 러시아를 들 수 있는데(시장점유율 23%) 동국의 공급량의 반은 자국의 매장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개의 남아프리카 그룹이 세계의 백금 매장량의 90%를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 외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백금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인 과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백금은 런던, 뉴욕 및 동경의 거래시장에서 20% 미만의 양 밖에 거래되지 않고 있으며 80%는 장기계약에 의해서 거래되고 있다. 백금의 주요용도로는 보석 장식품(38%), 자동차의 배기가스 촉매(32%), 산업용 촉매(20%, 특히 화학, 유리 제조, TV 및 컴퓨터 디스플레이용 액정 제조) 등 세가지를 들 수 있다. 특히 상기 세가지 용도에서는 백금의 대체품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통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없다. 또한 백금 구입자가 볼 때에도 교섭의 여지는 거의 없다.

공급자로서도 사실상 대체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매장량은 전세계의 10% 정도인데 1990년 이후 동국의 매장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금세기 말에는 거의 고갈될 전망이다.

Lonrho 사의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과 근년 러시아의 증산으로 가격의 상대적인 하락을 가져왔다. 그런데 본 합병계획에의 Lonrho 사의 참여는 시장에서의 경쟁의 감소를 의미한다. EU는 본 합병으로 한편으로는 합병신회사(Gencor-Lonrho)가 또 한편으로는 Amplats 사가 양분하여 과점을 이루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건 심사 개시 이후 EU는 진행상황에 대하여 남아프리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여온 점을 강조하였다. 경쟁총국의 직원이 남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남아프리카 대표자가 부뤼셀에서 개최된 청문회에도 참석하였다.

(4/24, 1996, 구주위원회 신문 발표)

영국편

영국 공정거래청, 신주인수권 발행수수료에 대한 공동행위 조사

공정거래청(OFT)은 런던 시내의 기업에 대하여 OFT가 신주인수권의 발행수수료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것을 통보하는 동시에, 작년에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기업(약 80사)의 재무담당자에게 서면을 보내 수수료의 결정방법, 인수시 청구되는 수수료 또는 신주를 매각할 때의 가격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상세히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재무성은 고액의 인수수수료가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우려하기 때문에 OFT의 움직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기업은 발행기업의 성격이나 그때 그때의 지배적인 시장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증자자본금에 대하여 예외없이 2%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OFT는 작년 3월 현행제도에 의하여 발행 기업측이 1986년부터 1993년 사이에 과대한 수수료(약 2억 8900만 파운드)를 징수했다고 결론지은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당시 OFT는 동제도에 대하여 「독점·합병위원회」(MMC)에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런던투자은행가협회(LIBA)가 가격경쟁을 하게 될 때까지 2년간은 유예기간을 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FT 담당관은 4월 30일 “수수료가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작년 3월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2년간의 유예기간은 지나치게 길다. 기업측은 5월말까지 이번의 조사에 회답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프리즈만 장관은 본건을 MMC에 의뢰할지 여부를 6개월 이내에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로버트·후레밍」사(투자은행)의 회장으로 LIBA 회장이기도 한 Manser씨는 4월 30일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과 주식시장이다. 투자은행이나 주식중매인은 아니다.

문제는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Premption)에 관한 규칙의 개폐에 관하여 현재의 주주가 적응하여 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다”라고 논평하였다.

(5/1, 1996, Financial Times)

독점 및 기업결합 심사의 생략 - 영국 경쟁법은 개정될 것인가?

영국의 독점 및 기업결합위원회(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 MMC, 오저스 위원장)는 지난 4월 미국 최대의 전력회사인 Southern 사(애틀랜타 소재)에 의한 영국 최대의 발전회사 National Power 사(영국 및 웨일즈 발전시장의 4분의 1을 지배)와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도록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전력업계의 기업결합은 작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만, 만일 이 건이 승인된다면 정부로서는 정치적인 불쾌감을 야기하는 근본이 될 것이며, 경쟁정책에 대한 비판을 점점 더 강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국이 경쟁법의 개정 실

패하였기 때문에 영국 기업의 경쟁력도 손상을 입고 말았다고 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최근 공표된 일련의 MMC 보고서는 인스턴트 커피, 아이스크림에서 향수,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스, 맥주 및 신문업의 조사에 관하여 장관이 MMC의 판단을 반복하였다.

OFT와 MMC는 법규상으로는 자매기관인 것처럼 되어 있으며, OFT가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MMC는 정식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강력한 독점금지법의 집행이 국민경제에 좋은 것인가, 아닌가라는 우려에서 정부의 경쟁정책의 약점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에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같이 비춰지고 있다. 1989년, 당시의 대처 정권은 백서(통상은 입법에 우선하는 것임)를 공표하고, 1976년 제한적 거래관행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1992년 정부는 그린 페이퍼(통상은 백서에 선행하여 공표됨)를 공

표하여, 세 가지 개정 모델을 제안하여 법개정을 추구하였으나, 이때에는 산업계의 반대가 강하여, 개정 제안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1996년 3월, 랭 통상산업부 장관은 위법한 카르텔을 금지하는 법개정계획에 관한 자문문서(통상은 그린 페이퍼에 앞서 공포됨)를 공포했다.

3년 전 MMC 위원장에 취임할 때 오저스 위원장은 경쟁법의 지나친 집행이 훌륭한 영국 기업에 손해를 줄 우려가 있고, 적당히 산업의 이익에 관심을 두는 것도 중요하며, 따라서 다수의 사례에서 경쟁은 유익하기는 하였지만 보다 광범위한 이익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경쟁법 또는 경쟁정책의 집행은 약해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은 Southern사에 의한 National Power 사와의 기업 결합에 관한 MMC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보여진다. 동 보고서는 기업결합에 의한 규모의 확대를 통하여, 보다 광범위한 숙련과 경험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국제적 경쟁자가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MMC가 증거수집 및 복잡한 시장 분석에 전력을 다하여 몰두하였다 하여도, 최종 결과는 전문가가 아닌 소수의 비상근위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최근의 사건은 오저스 위원장이 통솔하는 패널이 보고서를 정리하였으나, 패널은 노동조합의 대표, 여행회사의 임원, BBC 방송의 임원, 교수(경제학 전공), 그리고 오저스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OFT와 MMC와의 사이에 관할권의 중복에 대하여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전술한 자문보고서는 장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서는 제재금을 부과하며, 특히 경쟁법집행기관을 통합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영국산업연맹(BCI)은 장관 권한의 제한과 위반자에 대한 제재금의 부과에 관하여서는 정부제안을 넘는 법개정을 모색하며, 한편으로 OFT와 MMC와의 통합에는 반대를 표명하는 등 근본적인 경쟁법의 개정을 요청하였

다. 정부의 제안과 동일보조를 취하여 온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자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개정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영국의 경쟁법 개정은 7년을 경과하여도 아직 기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하는 느낌이 강하다.

(4/27, 1996, The Economist, 5/8, 1996, Financial Times, 국제상사법무, Vol. 24, No. 7)

독일편

독일, 디지털 TV 전쟁 개시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9일 독일 방송사들, 독일 국영 전기통신회사인 Deutsche Telekom 사 및 프랑스 언론사인 Canal Plus 사에 의한 컨소시엄의 디지털 텔레비전 서비스 회사인 MMBG 사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연방카르텔청은 독일 텔레비전 산업에서의 주요 회사들 다수가 MMBG 사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합이 경쟁을 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인해 독일에서 가장 큰 두 TV 회사인 Bertelsmann사와 Kirchgroup사간에 유료 TV 시장의 개발을 둘러싸고 한바탕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MMBG사는 Bertelsmann사, 독일 공영 방송사인 ARD사 및 ZDS사, 룩셈부르크의 CLT사 및 Canal Plus사와 Deutsche Telekom사가 독일에서의 디지털 텔레비전의 기술 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이를 전 유럽으로 확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사업의 중심은 디지털 전송된 텔레비전 신호의 코드 변환기인 Mediabox이다.

Deutsche Telekom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MMBG사를 대신하여 85,000대의 Mediabox를 주문했다고 발표하였다. 독일의 현존하는 유일한 유료 TV 네트워크인 Premiere사도 시험용으로 30,000대의 코드 변환기를 주문하였다고 밝혔다.

Bertelsmann사와 Canal

Plus사는 Premiere사의 75%의 주식을 통제하고 있는데, Premiere사의 시청자들은 1백만 명이 조금 넘는다.

Kirchgroup사는 처음에는 MMBG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후 동사는 공공사업자인 Veba사와 소매점 그룹인 Metro가 함께 개발중인 D 박스라고 불리는 코드 변환기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까지는 Kirchgroup사가 독일에서의 디지털 유료 TV 설립 경쟁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D 박스는 이미 시험중이며 Kirchgroup사는 올 여름에 이 코드 변환기를 사용하는 유료 TV 네트워크인 DF-1을 발족하기로 결정하였다.

MMBG사의 Mediabox는 Bertelsmann사와 Canal Plus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Société Européennes Control d'Access에 의해 개발되었다.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뒤이어 MMBG사의 공식적인 설립이 곧 예측되고 있다.

(5/10, 1996, Financial Times)

독일 정부, 경쟁제한금지법의 개정 제안

독일정부는 5월 4일, 국내경쟁법을 EU 경쟁법과 조화시키기 위해 경쟁제한금지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렉스포트 경제장관이 행한 제안에서는 연방카르텔청에의 기업결합신고(사후)요건에 대하여 현행 관계기업의 연간매출액 5억 마르크가 2배인 10억 마르크로 인상되어 있다.

또, 현행법에서는 운수, 은행, 보험 및 농업 각 분야의 기업결합은 적용면제로 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하는 것도 제안되어 있다.

한편 에너지 분야에 대하여서는 이번 법안의 대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으나,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취급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장관은 연방카르텔청이 내린 기업결합에 관한 결정을 번복할 권한을 보유하는 것으로 된다. 서적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존속하는 것으로 된다. 경제장관은 교육 및 문화정책을 이유로 하여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하여 산업계는 환영하고 있으며, 의회에 대하여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공업연맹(BDI)은 이와 같은 법안이 성립된다고 하여도 기업결합 및 시장지배적 지위의 정의에 관한 독일법과 EU법과의 차이가 해소될 리는 없다고 하였다. BDI의 경쟁법 전문가인 Dressel은 “이 두 가지 점이 중요하며, 경쟁법의 조화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다. 독일의 경쟁당국이 보다 광범한 평가를 내리는 데 비하여 EU법은 1사가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독일에서는 (EU보다도) 이른 단계에서 경쟁당국이 관여하는 것으로 된다. BDI는 유럽위원회의 경쟁총국쪽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에 관하여서는 BDI는 독일 경쟁당국이 평가를 위한 정의를 지나치게 좁게 채택하고 있어, 오로지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착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EU법은 평가를 내릴 때에는 특정 시장의 상황

전체를 고려에 넣고 있다”고 하였다.

법률안은 현재 의회제출 전자문단계에 있다. 경제장관은 이 법안이 현행회기(1998년에 종료됨) 말에는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 /10, 1996, Financial Times, &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3, 1996 & 국제상사법무, Vol. 24, No. 6(1996))

기타

이탈리아, 독자적인 EU 반트러스트 기관 설립 지지

전 이탈리아 수상이며 이탈리아의 반트러스트 당국의 책임자였던 Giuliano Amato는 5월 7일 독립적인 유럽 반트러스트 기관을 설립하자는 독일의 제안에 지지를 표했다.

이탈리아 반트러스트 당국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Amato는 브뤼셀의 유럽위원회와 별개의 초국가적 유럽 조직을 창설하는 것은 반경쟁

적 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그러한 조직은 특정한 경우에서의 EU 법의 엄격한 적용의 감독과 유럽위원회의 역할, 즉 ‘회원국들의 정책지침 준수, 특히 경쟁정책의 촉진을 위한 장치의 개발이라는 보다 광범한 정책을 책임지는’ 역할간의 필요한 분담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 주요 분야는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의 남용 영역과 독점 또는 유사독점에 이르게 될 기업결합의 감시 및 방지 영역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이미 유럽위원회에 알려진 독일의 견해에 근접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전 독일 대표위원이었던 Claus Dieter Ehlermann은 현재 유럽 반트러스트 당국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동 위원회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그러한 조직의 창설은 장기적으로는 거의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 때에 쓸 수 있으려면 이를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토론토에 소재한 중개회사인 Midland Walwyn Capital Inc.의 회장 Bob Schultz는 말하였다.

법원은 관련 우려사항을 다루면서 비금융 기관들에게 Interac망에의 접속을 광범하게 허용하려면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간의 수표의 교환 및 결제, 송금환 및 전자 자금이체를 감독하는 기관인 캐나다 지불협회(Canadian Payments Association)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법원은 캐나다 지불협회의 사업은 이 경우에는 ‘영향권 밖’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변화를 강력히 지지함을 암시하였다.

캐나다 생명·건강보험협회 회장인 Mark Daniels는 법원의 의견은 앞으로 행해질 캐나다 은행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주에 그러한 재검토를 발표한 바있다.

(6 / 26, 1996, The Wall Street Journal)

루마니아, 경쟁법을 제정

지난 3월 19일에 의회를 통과한 루마니아의 경쟁법이 4월 10일 대통령의 서명을 얻었다. 동법은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제도 개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목적 및 금지되는 행위

경쟁과 통상에서 경쟁의 틀을 보호, 유지 및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점적 행위, 불공정경쟁행위, 경제적 집중 외에 루마니아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을 제한 또는 방해하는 가격협정, 입찰담합 및 시장분할 그리고 경제적 집중 과정 및 지배적 경제지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제적 종속상태의 남용, 경제적 종속상태의 남용은 금지된다.

② 시행기관

가) 경쟁평의회

경쟁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독립적 행정기관으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나) 경쟁청

시장에 있어서의 불공정경쟁행위와 가격의 동향을 심사하며 경쟁평의회결정에 대한 집행상황을 감시한다.

③ 벌칙

최고 2억 5,000만 leu(8만 6,000미불) 혹은 기업의 매출의 10%의 벌금 또는 최고 4년의 구금형이 과해진다.

④ 시행일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쟁당국은 시행일까지에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이 법안은 EU의 경쟁법규와 조화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루마니아는 EU가맹을 신청중), 법안의 입안과정에서 미국 경쟁당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3/28, 4/18, 1996, ATKR)

이탈리아의 움직임은 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EU 관련 정책입안 중 하나를 대표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2월 국가별 반트러스트 당국들이 초국경적 결과를 갖는 조치로써 반경쟁적 관행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에 Amato도 조치를 제안하도록 권유받아 왔다.

최근 이탈리아 당국은 독일의 산업재벌인 Mannesmann AG가 관련된 사건에 개입하였다. 이탈리아의 엔지니어링 그룹인 Italimpianti 사에 속하는 자회사들에 대한 Mannesmann 사의 인수 이후, 이 반트러스트 당국은 이 인수로 인하여 무봉합 철강파이프 생산공장의 디자인 및 건설에서의 국제적인 지배적 지위가 형성되었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로 Mannesmann 사는 다른 사업자들이 이탈리아 및 기타 EU 지역에서 이 부문의 진입이 방해받지 않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Amato는 지난 4년간 이탈리아에서의 민영화 속도에 대하여 보고서에서 혹평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1995년 동안 취해진 다수의 조치들을 강조하였는데, 이에는 47건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378건의 기업결합 조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Amato는 더 나아가 국영 전기통신사업에 대하여 자유화 움직임에 저항하고 있다고 공격하였다. 그는 거의 단독으로 국영 전기통신 그룹인 Stet을 민영화 목록에 올려놓았는데, 이는 제한적 관행을 폐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다. (5/8, 1996, FinancialTimes)

캐나다 법원, 주요 은행들에 대해 전자 뱅킹 시스템 접근 확대를 명령

캐나다 경쟁법원은 캐나다 주요 금융기관들이 전자 뱅킹 시스템을 다른 회원사들, 특히 소매업체 및 소규모 금융기관들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전자 뱅킹 시스템, 특히 은행 카드 발급에 관한 동등한 접근을 원하는 회원업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Interac으로 알려진 이 시스템은 전국적인 자동화 뱅킹 공유망 및 소매점에 설치되어 있는 직불 카드 기기망을 포함한다. 직불 카드 기기들은 금융기관의 소유이다.

이 판결은 Interac 회원사들에게 신규 회원사들에 대한 진입 관련 규칙 및 기타 제한을 완화하고 또 과도한 회비를 청구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소규모 은행 및 신탁회사들은 Interac 망에 연결되는 자동화 뱅킹 기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소매업체들 또한 금융기관에서 직불 카드 기기를 임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소유인 직불 카드 기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매업체들이 직불 카드를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들 또한 전자 뱅킹시스템에의 참여 허가를 요청했었지만, 법원은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판결할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Interac 회원사들은 동 명령에 따를 것에 합의하였다.

“법원의 판결은 금전을 편리